

복합중재에 관한 소고*

박 영 길**

〈목 차〉

- I. 서 론
- II. 복합중재의 의미의 한정
- III. 순수한 다수쟁점의 상황
- IV. 순수한다수당사자의 상황
- V. 순수한 다수계약의 상황
- VI. 결 어

I. 서 론

국제상사중재는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관련된 양당사자가 중재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순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히려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¹⁾. 예를 들면, 수 개의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도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할 수도 있으며, 회사를 2개의 국가가 공유한 경우에 각국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은행 또는 다수의 일련의 은행들이 보증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에 는 합의항목, 특정목적 을 가진 기업의 정관, 수행될 사업의 상이한 측면에 관한 다양한 계약, 복수의 계약, 하도급 계약 등과 같은 관련된 수많은 계약이 있다. 또한 분쟁에서의 쟁점이 단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즉 복수청구가 있을 수 있고, 반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종래의 중재법을 현실의 국제거래의 상황에 적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재법은 오늘날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전형적인 것으로 되어 가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기에, ILA(International Law Association)²⁾,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은 제66차 Buenos Aires 총회와, 제67차 Helsinki총회에서 이와 같은 복합된 상황에 의하여 특히 야기되는 절차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소위 “복합중재”(Complex Arbitrations)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여 제66차 ILA Buenos Aires총회에서 제1차 중간보고서와 제67차 Helsinki 총회에서 제2차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위의 제1차 보고서를 정리, 검토한 것이다.

- 1) 중재의 하나의 형태인 다수당사자관여의 중재의수는 최근15년간에 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점에 대해서는, J. Gillis Wetter, Overview of the Issues of Multi-party Arbitration, in: Multiparty Arbitration, hrsg. v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91, S. 9 참조.
- 2) ILA(우리 나라에서는 “세계국제법협회”라 부르고 있다)는 국제법의 발전과 개정을 위한 학회로서, 1873년 10월 브뤼셀에서 창립되어, 현재는 영국 런던에 그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 Branch가 있다. ILA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문제점들을 선정하여 이를 연구하고, 그 보고서작성하여, ILA의 이름으로 해당 국제기구에 제출함으로써 국제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상사법통일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I. [복합중재 (Complex Arbitrations)]의 의미의 한정

복합중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국제상사중재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X라는 문제에 관하여 A대 B의 분쟁이 있으나, 분쟁이 A대 B에 그치지 않고, A대 B 및 C, A 및 B대 C 및 D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가 다수로 된다는지, 1인 또는 3인이 가장 보통의 數인 중재인을 어떻게 선임하는가, 사건의 병합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는 [다수당사자중재] (Multi-party Arbitration)의 문제로 된다. 복합중재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뿐 만 아니라,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게 된 계약이 복수, 문제도 복수, 혹은 당사자는 복수가 아니나, 계약관계는 복수라는 경우의 중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복합중재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계자는 3인(ABC). 중재합의를 포함한 계약이 A B간에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자 C는, 3자의 권리의무관계를, 1건으로 해결하는 것을 바란다. 이와 같은 상황은, A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B가 건설업자, C가 B의 하도급업자인 것과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다. ② 관계자는 3인(ABC). 중재합의를 포함한 계약이 ABC간에 있다. A가 B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중재절차를 개시한다. B는 C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중재절차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컨소시엄 계약에서 볼 수 있다. ③ 관계자 3인(ABC). 계약이 B A간, B C간에 있고, 각각이 중재합의(예컨대, 일방이 ICC중재지정, 타방이 ad hoc 중재지정, 쌍방이 ICC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를 포함한다. B가 A에 대해서 중재를 청구한다. B는 C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으나, 절차를 병합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상황은, A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B가 건설업자, C가 다른 건설업자인 것과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위 다수당사자 중재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같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복수인 경우 등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변형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 3가지로 그 형태를 한정하여 검토하여 한다.

① 순수한 다수쟁점 상황(Pure Multi-Issues Situations)--이는 양당사자, 하나의 계약, 수개의 쟁점 또는 청구에 관한 것이다.

② 순수한 다수당사자 상황(Pure Multi-Party Situations)--이는 두 당사자 혹

은 두 당사자 이상, 즉 A, B와 C, 하나의 계약에 관한 것이다.

③ 순수한 다수계약 상황(Pure Multi-Contract situation)--- 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수개의 계약에 관계된 사건이다.

Ⅲ. 순수한 다수쟁점의 상황

1. [다수쟁점]인 중재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복수의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예비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새로운 청구가 제기되고 계류중인 청구가 변경될 때까지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Committee의 위원인 스위스의 Pierre Karrer 는 취리히 상공회의소 중재규칙(Arbitration Rule of the Zürich Chamber of Commerce---소위 Zürich Rule)을 인용하여, 새로운 청구의 제기나 계류중인 청구의 변경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인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구의 제기나 계류중인 청구의 변경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관할권의 부존재의 항변이 제기되기 전까지 합리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Zürich Rule 25조). 그 시기는 피신청인이 청구의 실체에 대하여 답변하는 때까지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다면, ICC Rules하에서 새로운 청구의 제기나 계류중인 청구의 변경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ICC Rules는 중재인의 권한에 대한 기피(ICC Rules 8(4)조)를 위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중재합의가 작성되고 ICC Rules 13조에 서명되거나 승인되면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하여 어떠한 기피도 제기할 수 없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계류중인 청구의 변경이나 새로운 청구의 제기는 모두 양당사자의 동의와 ICC Rules 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합의 조건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런던 국제중재법원 규칙 5.2조(Article 5.2 of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이하 "LCIA Rules"라 한다)는 또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최종적인 종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법에

서 허용된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ICC Rules와의 관계에서 위에서 언급된 것은 여기에도 역시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인이 중재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일탈하고 있다는 항변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릅쓰고 만약 중재인들이 그들의 권한을 일탈하여 있다고 주장된 문제를 결정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즉시 제기된다면 중재의 어느 단계에서나 또한 답변서가 접수된 후이라도 중재인이 그들의 권한을 일탈하고 있다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LCIA Rules 6조)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와 항변이 접수된 후에는 추가적인 청구나 계류중인 청구의 변경은 LCIA Rules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LCIA Rules 14.2조).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이하 "Model Law"라 한다) 23조 2항은 어느 당사자나 중재판정부가 "중재를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자신의 청구의 내용이나 답변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음을 명정하고 있다. Model Law는 진행중인 청구내용이나 답변을 수정하거나 보충을 어느 시점이나 --- 심지어 답변서가 제출된 후라도--- 허용한다는데 있어서 LCIA Rules 보다 더 포괄적인 것 같다.

이 점에서 UNCITRAL 중재규칙 20조와 유사한 미국 중재협회 국제중재규칙(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4조는 청구 또는 반대청구의 수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의이거나 그것이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수정합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 한 반대청구 또는 답변의 수정 또는 보충을 허용하고 있다.

2. 중재와 관련하여 하나의 쟁점에 제3당사자가 개입하는 것으로는 신청인 A가 중재합의에 서명한 B와 중재합의 당사자가 아닌 C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는 중재원인을 야기한 계약자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설계사(설계사는 분쟁에 관하여는 중재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가정)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가지 해결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A는 중재조항을 무시하고 B와 C에 대해서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서는 중재결정이 중재조항에 합의한 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기판력을 가지려면 중재절차 개시의 통지가 그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³⁾ 그러한 당사자의 어느 곳으로 그 통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당사자가 중재의 참가를 거부하면 그러한 중재합의는 原當事者간에서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중재판정은 기판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는 기판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콜롬비아법에서도 불명확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재판정은 기판력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사자에 관해서만 그 판정이 재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그리고 이것은 소구나 판결을 무효화하는 모든 수단은 소멸되었거나 그러한 것을 제기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들중 누구도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또는 중재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콜롬비아법 30조의 의미를 이상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것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재의 유일한 당사자는 중재계약에 서명한 자들이 것이므로, 제3자에게 장래의 중재결정의 기판력의 효력을 적용하거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명한 것으로 기판력이 참가당사자 또는 동일한 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면, 중재판정의 범위밖에 있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면, 본 규정은 하나의 단일한 절차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을 그들의 청구에 따라 잠재적인 책임을 지우기를 희망하는 원고들과 청구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나 사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당사자들을 중재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는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의 병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견해가 있다. 즉 기판력은 제3자의 병합을 의미한다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중재법원은 중재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콜롬비아법 30조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로, 서명할 당시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계약상의 합의가 헛되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3) art. 30, Decree 2279/89(Colombian Decree) Law 23 of 1991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4) R. Gambora Serrano, El Proceso Arbitral en Columbia, 70-73(1992).

하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명자사이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⁵⁾.

그런데 LCIA규칙(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13조(c)는 관련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제3자의 병합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WIPO Rules 18조(d)에서는 관련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아닌 자라도 논의 중의 사안에 대하여, 중재조항의 당사자들이 본래 선임한 중재자들의 선임에 동의하고 WIPO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마치 그 자가 중재조항에 서명한 것으로 보고, 그가 병합에 제안한데 대하여 적어도 당사자들 중 1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계속되는 중재의 병합청구자로서 또는 피신청인으로서 임의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 958/91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위원회(the Drafting Commission)가 작성한 아르헨티나 중재법 초안(the Draft Argentine Arbitration Law) 26조는, 만약 신청된 분쟁이 중재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 다른 분쟁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모든 연관된 분쟁들을 오직 한명의 중재심판관(adjudicator)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익한 경우에는,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전속관할권을 행사하여 중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Model Law 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8조(1)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었을 경우로서, 일방당사자가 그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차 진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효되었거나, 또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8조(2)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개시되거나 속행될 수 있으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본 규정으로는 두 가지 절차 중 어떠한 것이 모든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결정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과 중재판정의 충돌을 막을 수도 없다⁶⁾. 미국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은 연방법원(federal court)관할권에 속하는 사안들과 중재조항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들간의

5) H. Grigera Naón, Arbitration in Latin America : recent developments in Mexico and Colombia, 4 Jahrbuch für die Praxis der Schiedsgerichtsbarkeit 263, 271-274(1990).

6) A. Broches, Commentary on the Uncitral Model Law, 49-51(1990).

연관성으로 후자가 중재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중재절차의 중지의 근거로서 들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⁷⁾.

IV. 순수한 다수당사자의 상황

1. 순수한 다수당사자 사건으로 상정되는 고전적인 유형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거래에 관련되는 중재조항이다. 당사자 A가 B에 대하여 중재절차를 개시하고, 그 후 B가 동일한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C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허용되는가?

당사자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근거가 A와 B사이의 분쟁과 충분한 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테면, A는 발주자이고, B와 C는 각각 작업의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예컨대, B는 설계와 세부 엔지니어링을, 그리고 C는 기본 엔지니어링, 설비 및 건물의 건축을 담당하는 턴키베이스 건설계약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이다. 시운전의 결과 그 공장은 A와 체결한 계약조건의 최저생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A는 잘못된 설계 또는 세부적인 엔지니어링에 관한 결함에 대해 책임을 물어 B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B는 그러한 결함을 C에 의해 제작/공급된 장비 및 작업에 그 하자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C를 공격한다. 중재계약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A의 B에 대한 청구와 B의 C에 대한 청구는 동일한 중재절차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중재에 그들의 계약실행을 따를 당사자의 의무(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와 비용의 증가(C에 대한 B의 청구를 위하여 별개의 중재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나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며 또한 상호 모순될 수 있으며 (중재법원을 개입시킴으로서 동일한 증거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절차상의 활동을 피하기 위한 필요와 일치할 수 있다. 당사자들간에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패널이 지정되기에 앞서, C가 그러

7) Dean Witter Reynolds, Inc. v. Byrd, 470 U. S. 213(1985).

한 선정에 참가하도록 C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⁸⁾.

2. 그런데 당사자 평등의 개념의 확장을 구체화한 프랑스 Cour de Cassation (破毀院)의 Dutco사건에서 다수당사자 중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회사가 당사자로 된 Dutco 대 BKMI/Siemens사건⁹⁾을 보면, 본 건에서는, ICC중재규칙을 절차준칙으로 하는 것을 합의하고 있으나, ICC중재규칙은 다수당사자관여의 중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었다. ICC중재법원은 실무관행에 따라, 복수의 피신청인을 중재절차상 일체로 보고, 피신청인 전원을 위하여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Dutco 대 BKMI/ Siemens 사건의 중재계약에서 합의되어 있는 것은, 각주 (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성원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중재법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Dutco는, 중재를 신청한 때, 이러한 2사에 대해서 1인의 공통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에게는 각각 독자의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

8) R. Budin, Les clauses arbitrales internationales (1993) 78-81; 82-85.

9)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BKMI사(독일)는 오만회사의 시멘트 공장건설을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도급하고, 그 후, 컨소시엄계약을 Dutco(UAE) 및 Siemens(독일)와 체결하고, 3사가 작업범위를 분담하였다. 동계약의 중재조항에는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당사자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ICC중재규칙에 의하여, 동 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3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파리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Dutco사는 독일의2사에 계약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중재조항에 따라 ICC중재법원(파리)에 중재신청을 하고 양사로부터 별도로 각각의 지급을 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BKMI와 Siemens는 별개의 중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동일절차에 반대하였다.

ICC중재법원은, 하나의 仲裁廷으로서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Dutco사가 1명, BKMI와 Siemens가 공동으로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양 사는 異議를 유보한채로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였다. Dutco가 중재인 1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1명의 의장은 ICC중재법원이 임명하였다. ICC중재법원은, 중간적중재판단에 의하여, 중재절차는 적절하게 개시되고 있으며, 다수당사자간중재의 형식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간에는 상반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공동소송의 요건은 이 경우에는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Schwab는 이 사건을 [확장된(erweiterte)]다수당사자관여의 중재, 라고 표현된 사례라고 하고 있다, Schwab, Mehrparteinschiedsgerichtsbarkeit und Streitgenossenschaft, FS W. Habscheid 1989, S. 287-288.

하였다. 그러나, ICC중재법원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독자의 중재인의 선정권에 대해 유보한채, 1인의 공통의 중재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구성된 중재법원은 ICC중재규칙 2조4항을 근거로 하여, 당해 중재법원의 구성은 적법하다, 라고 판단하였다. 동조에 의하면, 각 중재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2인의 중재인이 그의 합의에 기하여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본 건의 중재법원은, 중재법원에서 ICC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당사자는 중재조항중에서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동조의 적용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 및 公序의 어느 것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KMI와 Siemens는 파리 抗訴院에 仲裁法院구성의 反則性 및 이에 관한 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은 국제적공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중재판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파리 항소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파리 抗訴院(Cour d'appel de Paris)은, 그 이유로서, ICC중재규칙은 다수당사자간중재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가 컨소시엄계약을 맺는 것은, 그 밀접한 다수당사자적제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계약당사자는 다수당사자간중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ICC중재규칙 제2조(4)는, [각 당사자]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자가 [자기의]중재인을 선정하는 권리는 기본적인 것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본 건에서는, 중재법원구성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사자의 평등적 취급의 원칙 및 公序의 준칙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수당사자간중재는 그 성질로서, 당사자의 평등적 취급의 원칙과 아울러 公序에 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준칙에 영향을 주어 참을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중재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ICC중재규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인(원고)은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破毀院(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은, 본건의 중재법원의 구성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프랑스 破毀院은, 중재인의 선정시에 있어서 당사자는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원칙은 [公序]에 속하여, 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후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⁰⁾. 프랑스 破毀院의 판결은 일방당사자는 그 자신의 중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자유로우나 타당 당사자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이를테면, 그들은 공동원고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동일한 중재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선정기관(appointing authority)이나 법원에 의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전원에 의하여 선정된 모든 중재자들이 당사자 전원의 승인을 받거나, 법원이나 당사자 전원이 승인한 선정기관에 의하여 선임되지 않는 한, 평등의 원칙은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수당사자 중재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정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WIPO Rule(18조(a), (b), (c))은 3인의 중재인에 의한 다수 당사자 중재(a three-arbitrator-multi-party arbitration)에 있어서, 중재신청서에 ① 1인 이상의 원고가 존재하거나, ② 1인 이상의 피고가 존재하거나, ③ 1인 이상의 원고나 피고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원고들은 그들의 공동 중재인을 승인하였으나 피고들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측과 피고측 중재인은 WIPO Center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그들 중재인들은 중재인중에서 대표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순수한 다수계약의 상황

1. 순수한 다수계약의 예로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A와 B가 독자적인 중재조항을 갖추고 있는 별개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중재조항에 따라 양 계약관계에 관한 중재가 개시된 경우에 양 절차를 하나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양 계약관계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병합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당사자들간에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모순되고 상반되는 중재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와,

② 다른 계약이나 법률상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의해서 선택된 중재소송이 본질

10) Stelios Koussoulis, Fragen zur Mehrparteinschiedsgerichtbarkeit, ZZP 107 Band, Heft 2, 1994, S.201-202.

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는 중재의 기초중의 하나이며, 항상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각각의 계약들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중재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예컨대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미국중재협회(AAA)를,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ICC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반되는 판정의 위험을 감수하고 별개의 패널을 결정할 것이므로, 그들은 법원에 의하여 그들에게 의견상 강요되던 병합의 가능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CC국제중재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내규(Internal Rules) 13조는 양 청구가 동일한 법적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ICC중재조항에 따라 A가 B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를 A와 B사이에 계류중인 기존의 ICC중재에 편입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ICC Rule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해결책에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비교법상의 일반규정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 관련된 모든 중재조항에 대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병합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병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초안 25조는 모든 중재가 동일한 형태로 병합되거나 동일한 중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중재규칙을 따르는 것이 “명백히 편리한” 경우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절차를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병합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간의 NAFTA조약 1126조는, 각각의 청구가 “... 공동의 법률문제나 사실문제를 가지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중재소송이 고려된다고 하는 1120조에 따라 중재가 신청된 외국투자청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ICSID 사무총장은 3인을 선임하여 특별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그러한 특별중재부는 그 중재부가 결정하는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병합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중 일부는 중재절차의 법원의 명령에 의한 병합을 강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¹¹⁾. 그러나 Boeing사 사건에서는, 각각의 중재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나 묵시

11) See, 예컨대, *Compañía Española de Petróleos, S.A. v. Nereus Shipping*, 527 F. 2d.966(2d. Cir.1975).

적으로 병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병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¹²⁾.

즉, 보잉(Boeing)사 사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¹³⁾,

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영국정부소유의 군용헬리콥터의 전기적연료제어장치의 지상시험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T사가 동창지를 설계하고 또 엔진을 제작한 것을, 보잉사가 자사에서 제작한 헬리콥터에 장착하였다. 보잉사와 T사는 따로따로 영국 정부의 군수품 프로젝트에 관해서 장기계약관계에 있으며, 계약서는 각기 작성되었으며, 각각에 중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서, 미국중재협회(AAA)의 중재규칙에 따르고, 중재인은 3인, 뉴욕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양사는 또 전기적연료제어시스템의 양사 각각의 책임을 규정한 인터페이스(Interface)에 관한 별개의 계약서의 계약의 당사자로도 되어 있었다.

사고로부터 2년반후, 영국 정부는 AAA에 대해서 사고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잉사와 T사에 청구하기 위한 중재의 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의 전후에, 영국 정부는 양사에 대해서 병합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잉사는 병합할 경우에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문제점이 단독의 경우가 병합한 경우에 비해서 단순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병합에 동의하지 않았다.

AAA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병합을 명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② 영구 정부는, 연방지법 뉴요주 南管轄區에 중재병합강제의 신청을 하였다.

연방지법은,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제2巡廻區의 선례 및 연방민사소송규칙에 기해서 그 신청을 인정하고, 보잉의 각하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보잉사가 항소하였다.

③ 연방 제2巡廻區抗訴法院은, 지법이 선례로서 인용한 Nereus 사건과 본 건과를 구별하였다. 전자에서는, 선주와 용선자간의 용선계약후에, 선주, 傭船者 및 보증인의 3당사자가 합의한 각서가 있는데, 그 중에 용선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인용되었다. 따라서 그 3당사자가 단일의 중재를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2) Government of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v. Boeing Co., 998 F. 2d 68(2d. Cir.1993). See also note in 107 Har.L.Rev. 499-504(1993).

13) 大隈一武, 國際商事仲裁の 理論と實務, 中央經濟社, 98-100면.

그러나, 본 건에 있어서는, 영국 정부는 보잉사와 T사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다고 보여지며, 어느 계약서도 중재병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잉사도 T사도 상대방의 중재에 참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분쟁이 유사 또는 동일한 사실 및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해서, 2개의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권한은 지법에는 없다.

영국정부는, 연방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장하였다. 당해 법원은 민사소송규칙 42(a) 및 81(a)(3)이 적용되어, 중재법의 字意에 구애받지 않은 목적은 명백하게 중재절차의 병합을 인정하고 또 권장한 것이라고 述한 것에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은, 이 종전의 결론의 근거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연방중재법은, 계약의 조항에 따르지 않는 한, 중재절차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법규칙 42(a) 및 81(a)(3)에 관한 영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81(a)(3)은, 중재법이 적절한 절차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중재법에 의하여 법정에 끌어낸 사법절차에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인정할 뿐 이다. 동조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재법절차에 의한 사적인 중재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연방최고법원은, 3개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연방중재법은 사적으로 교섭된 중재계약의 집행, 예컨대 그 집행이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 확보하는 것만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同法은 요컨대, 모든 청구에 관하여 중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교섭된 중재계약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할 뿐이다.

중재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경우의 비효율성과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우려를 영국정부는 주장하나,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생긴 모든 분쟁을 단일의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계약의 중재조항에 중재의 병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 당사자의 계약에 중재병합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지법은, 별개의 중재조항에서 생긴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④ 이 판결에 의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순회구가 오랜 기간동안,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도 중재병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를 변경하였다.

2. 순수한 다수계약 상황에서의 또 하나의 사례로서, A가 B 및 C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합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로서 미

국 뉴욕남부 지방법원의 Clipper Gas사건에 판결을 들 수 있다¹⁴⁾. 이 사건의 내용은, A는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체가능한 동일한 화학약품을 수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B와 C와 각각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완전히 동일한 중재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B와 C 모두 A의 유조선내에 화학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항구에 도착하여 B의 물건을 하역할 때, 약품이 물에 오염되었음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B의 바이어에 의해 거절되었고 A의 선박은 대체 바이어를 찾을 때까지 항구에서 지체하였고 滯船料를 지불하여야 하게 되었다. A는 滯船料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B와의 계약에 따라 중재청구를 하였다. B는 그 청구를 거부하고 체선료를 발생시키고 약품을 혼합시킨 것은 운송업자로서의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실이 있었음을 비난하는 反訴를 제기하였다. A는 이번에는 A와 B사이의 계약과 B, C의 약품에 대한 오염의 결과로서 A와 C사이의 계약하에서 제기되는 모든 중재절차는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중재판정의 충돌과 소송절차에 있어서 결론의 모순을 피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하여,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위에서 인용된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v. Boeing Co* 사건에 따른 최근의 법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선택이 과연 아직도 유효한가는 의문이다.

3. 순수한 다수계약의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또 다른 상황으로서, A가 B와 계약관계를 맺고 B와 C가 계약관계를 맺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발주자(A)가 도급인(B)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중재절차를 시작하였고 B는 A와 B사이의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인(C)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건축계약 사건이 그 예이다¹⁵⁾.

이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은 명백한 절차상의 이유로, 동일한 중재부가 동일한 중재절차의 과정에서 A, B, C 모든 당사자에 관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C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A와 B는 비밀스런 이유(예컨대, 그들은 C에게 가격과 기타 조건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조건 등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14) 7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D-1/D-7(1992).

15) Budin, 90-91.

것이다)로, A와 B가 처음에 시작된 절차에 C가 참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B는, C가 A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하도급계약의 위반에 부딪치게 되면, A는 C와 직접적으로나 C가 A에 대하여 反訴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든, C와의 중재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C 또한 A와의 중재에 말려들기를 바라지 않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질 수 있다.

몇가지 사건에서는, 중재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일반적인 중재절차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자치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해 계약의 범위와 효과는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하게 될 것이다¹⁶⁾.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계약의 당사자들이 제3자가 자신들이 본래 체결한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중재규칙(이를테면, WIPO규칙 18조(d))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이다.

原當事者와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당사자의 중재절차에의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A와 B사이의 계약에 하나의 조항을 두는 것인데, 그 조항에 따라 B가 B에 의하여 체결되는 각각의 하도급계약에 하나의 조항을 둘 의무를 지고, 그 조항은 하도급자 C가 주계약에 따라 개시되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의무와 관련을 가지는 모든 중재절차에서 A나 B의 청구에 의해 B와 공동피신청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물론 주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에는 하도급업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며, C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A와 B를 상대로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와 C가 反訴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한 조항에 달려있다.

반면에,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법률분쟁에 있어서 소진되고 소모되는 무수한 소송자료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법률적 지연 및 소송비용의 지출 및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에 따른 중재에 C가 참가하는 것을 A가 반대하는 경우, 당해 중재나 그 결과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B와 C와의 중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방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B와 C에게 있어서 편리할 것이다. 이를테면, A가 주계약상의 각각의 중재조항에 따라 B를 상대로 중

16) Budin, 132-149.

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C는 당사자가 아니다), B는 그러한 절차의 과정에 대하여 C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B가 방어하고 답변이나 준비서면, 反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C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B는 또한 C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답변이나 법률상당, 전문가 및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C가 B에게 제시한 증거에 의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반면에, A와 B간의 중재절차의 과정중에 해결된 모든 문제는 B와 C간의 중재절차의 과정중에 논의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계약상 창설된 부수적 금반언의 하나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의 하나로 다수당사자 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모든 신청인이 하나의 “신청인 측” 당사자로 그리고 모든 피신청인이 하나의 “피신청인 측” 당사자로 병합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원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이한 입장과 청구가 상당정도 근접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들을 하나의 당사자로 각각 병합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의 신청서나 소장 또는 변론, 답변서를 공통으로 통일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청인들이나 피신청인들의 각각의 구성원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상이하고 개별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제기된 반소가 피신청인들의 모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신청인들이나 피신청인들의 모두가 중재에 있어서 공통의 전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에 있어서 유사한 입장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그리고 단일한 당사자로서 의견상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효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다수당사자간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지정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일부가 당사자의 병합을 요청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1인의 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병합을 강제할 수 있는가? 신청인이나 또는 이미 병합된 신청인측이 피신청인들의 병합을 강제할 수 있는가? 반

대로 1인의 피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병합을 강제하거나 일부 피신청인이나 이미 병합된 피신청인측 당사자가 신청인측 당사자의 병합을 강제할 수 있는가? 그러한 합의가 있다면 병합이 있을 수 있고 신청인측이나 피신청인측의 모두가 내부적으로 피선정인인 중재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선정은 중재를 관장하는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권자에 의해서 또는 중재지 법원에 의하여 선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합은 중재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청구인 및 피신청인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동등하게 강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합이 가능할 뿐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평등의 원칙은 적절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한명의 중재인이 의견상 신청인측 모두를 위하여 선임되고, 또 다른 중재인이 의견상 피신청인측 모두를 위하여 선임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WIPO규칙 18조에 따라 제시되는 해결책과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해결을 허용할 준거중재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요청받은 법원에 의해 동일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New Swedish 중재법 초안 Section 1217)에 의하면 동일한 해결책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는 관련된 판례법 등은 찾을 수 없으나, 다수당사자간 중재에 관한 명문의 실정법적 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원활한 중재절차를 촉진하고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에 의거하여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VI. 결 어

오늘날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다수당사자간의 중재는 그 형태 또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중재가 제기하는 문제는 수많은 어려운 논점들을 제기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중재에 관한 법제도에 관하여는, 다수당사자간의 중재에 관하여 풍부한 판례가 이미 축적

17) 9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G-1/G-17(1994).

되어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미개척의 분야이다. 한나라의 법률자체는 그 시대와 법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복합중재에 관하여는 법제도 등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구촌화는 다자간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강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국제간에 있어서의 다수당사자간의 중재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다자간 국제조약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WTO협정, NAFTA 및 Mercosur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국내법으로서 복합중재에 관한 법제도 등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국제조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mplex Arbitrations (Multi-Issues, Multi-party, Multi-Contract)

Young Gil Park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have developed into a simple form in which both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by a contract intend to solve the dispute through the legal arbitration system. however nowadays the above traditional form taken by international projects are rarely seen and instead the form of complex arbitration in which many parties are involved has become more and more universal.

The complex arbitration means not only many-sided parties concerned but also means a plural number of contract involved in conflicts, a plural number of issues involved in conflicts and a plural number of contracts though their contractors are not in a plural number.

However in this report the complex arbitrations will be studied into categories as follows : 1. Pure multi-issue situations, 2. Pure multi-party situations, 3. Pure multi-contract situations.

A Pure Multi- Issue arbitration basically includes a plural number of claims between the two parties concerned.

A Pure Multi-party case classically presupposes an arbitration clause which involves a plural number of parties concerned.

After Party A takes a legal proceeding and then Party B institutes a request to Party C in the above proceeding. In that case the problem arises on whether it is allowed to do so or not.

A Pure Multi-Contract case presupposes that when Party A and Party B

have independent arbitration clauses based on separate contract relations, respectively, the problem is whether both above-mentioned proceedings can be unified into one or not.

As for the above-mentioned complex arbitration, though international treaties are being formed, including the WTO treaties, the NAFTA treaties, the Mercosur treaties and others, legal regulations and customs have not yet been formed domestically. The institutional preparations will be necessitated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legal status as well as international treaty relations.

참 고 문 헌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1991.
- 박상조·주기종·윤종진, 국제상사중재법론, 한울출판사, 1997.
- 이강빈, 다수당사자 중재에 있어서 절차병합과 중재인 선정, 중재학회지, 8권, 한국중재학회, 1998.
- 大隈一武, 國際商事仲裁の理論と實務, 中央經濟社, 1995.
- 谷口安平, 多數當事者間の國際商事仲裁, JCA ジャーナル, 81.9, 81.10.
- 谷本裕範, 多數當事者仲裁の問題點, 特に米國のそれについて.
- ILA, Complex Arbitrations(Multi-Issue, Multi-Party, Multi-Contract), First Interim Report, Report of the Sixty-Sixth Conference, 1994.
- Stelios Koussoulis, Fragen zur Mehrparteienschiedsgerichtsbarkeit, insbesondere zur Bestellung der Schiedsrichter, ZZP 107 Band, Heft 2, 1994.
- A. Broches, Commentary on the UNCITRAL Model Law, 1990.
- Schwab, Mehrparteienschiedsgerichtsbarkeit und Streitgenossenschaft, FS W. Habscheid 1989.